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
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과 특별승진을 위한 교육인정 요건 변경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속진형 경위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 마련(안 제 8조 6항)
- 나. 속진 임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위 및 경사 계급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(안 제 8조 5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
경위 및 경사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
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86조제1항라
목에 따라 선발된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
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)	제8조(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)
① ~ ④ (생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경정·경감·경위 및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(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71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정·경감· 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포함한다) 은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제6항에 따른 교 육훈련을 받은 경우 경위 및 경 사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<신설>	⑥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 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86조제 1항라목에 따라 선발된 경사 계 급의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⑥ · ⑦ (생략)	⑦ · 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	
연 락 처	(032) 835 - 2238